

-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장애 학생 등 권익 보호를 위한 -

업 무 협 약 서

대구대학교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장애 학생 등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가 상호 협력하여 청렴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장애 학생 고충 해소 등 대학생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대학생 청렴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
2. 대학교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
3. 대학협업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협력
4.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
5. 장애 학생 불편 시설 개선을 위한 협력
6. 대학생·교직원의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협력
7. 그 밖에 청렴교육 활성화, 청렴문화 확산 및 대학생·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비용부담)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.

제5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,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② 이 협약은 종료 이전 상호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. 이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③ 이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6월 27일



대구대학교

총장 박 순 진

박순진



국민권익위원회

위원장 유 철 환

유철환